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6년 8월 26일
안양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통신)
- 나. 위 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 일원(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 다. 공사개요: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주차타워 신축) 사업 관련 정보통신공사 1식
- ※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철도교통과 주차정책팀 ☎031-8045-229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개월
- 마. 총공사금액 : 금610,048,000원(금육억일천사만팔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 (A =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54,798,000	254,798,000	231,634,545	23,163,455	-	355,250,000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6,878,569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단독이행(공동수급 불허)

3. 현장설명

-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주차정책팀(☎031-8045-229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수) 10:00 ~ 2026. 9. 4.(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4.(금)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9. 4.(금) 15:00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6: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같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양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

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도급 제한을 받는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서 제출로 관련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6,878,569	4,072,130	5,380,422	535,077	2,605,257	4,285,683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 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관계 법령 및 공제회 운영기준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사용, 출·퇴근 기록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에 따라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text{입찰가격} - A) \div (\text{예정가격} - A) \times 100(\%)$ 으로 계산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text{평점(점)} = 90 - 20 \times | 90/100 - (\text{입찰가격} - A) / (\text{예정가격} - A) | \times 100$

※ 본 공사의 A값은 16,878,569원이며, 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에 공개된 A값과 적용 산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개정된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08,410,728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1원 미만 소수점 값은 절상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

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비 고
정보통신공사업	231,634,545	100%	

-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을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약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계법령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동일 입찰에 동시에 참가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사항이 일치하도록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요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양시 소재 업체의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 구매 및 지역인력·장비 활용 등에 적극 협조
 -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 아.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타. 문 의 처

-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4)
- ▶ 입찰참가자격,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229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약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당사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안양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양시 (분임)재무관 귀하